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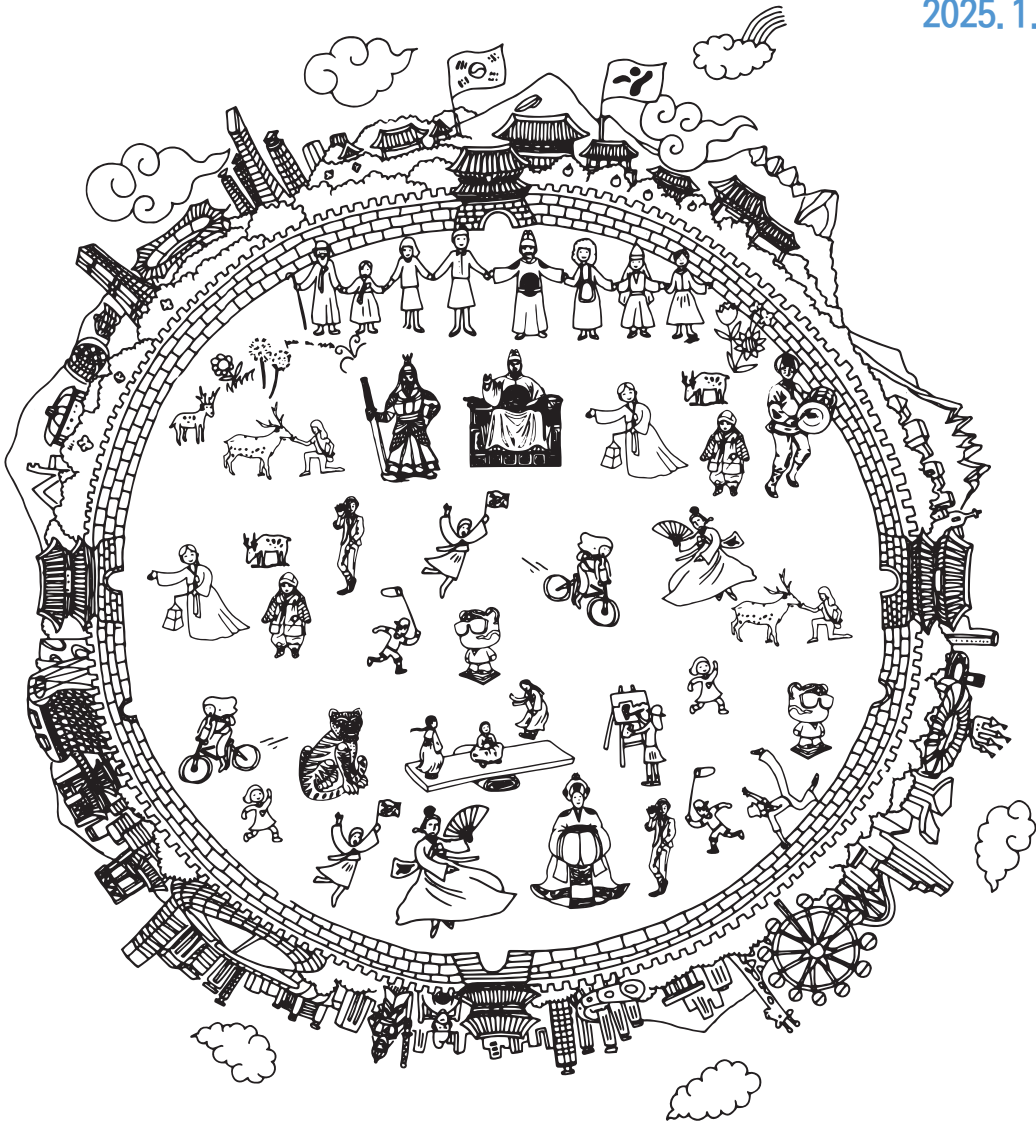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38호
2025. 1. 20.(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76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677호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4
제4678호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30
제467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3
제468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6
제4681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8
제4682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제468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
제4684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54
제4685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6
제468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8
제468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0
제468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72
제468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6

[훈 령]

제106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79
--------	---------------------------	----

◆ 공 고

제2025-93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84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6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소관사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로, “우리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라목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각 과 · 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 (직렬·직급 조정제외)	기안			○		조직담당관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가. 정원 증원요구	기안			○			
	나. 직급 상향조정	기안			○			
	다. 직급·직렬 간 상계조정	기안			○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조직담당관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기안			○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기안		○ (인사과장)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이하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도시외교담당관, 인력개발과장
	가. 3급이상		기안			○		
	나. 4급이하	기안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예산담당관
	가. 5억원 이상		기안			○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예산담당관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예산담당관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8. 지방채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재정담당관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3. 원리금 상환	기안		○				
	10. 규제개혁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1. 공 사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 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 미한 사항 변경	기안		○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3. 물건의 제조· 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8. 용역의 설계변경							기술심사 담당관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2.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4. 재산 및 채권관리	3. 물품구매·임대차 등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가. 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의 취득·처분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 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 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 보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 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 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기안			○		
	1) 5억원 이상							
	2) 5억원 미만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 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6. 보 상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기안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인사과장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20. 의회업무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출	기안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법률지원담당관	
	가. 중요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다. 집행정지	기안		○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기안○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법무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법무담당관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및 폐지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4. 자료제출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법무담당관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기안		○				
	2. 중요업무 및 중요사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 (청내, 왕복문서)	기안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기안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기안		○				
	5. 정기보고	기안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25. 위원회 운영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기안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기안		○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조직담당관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전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26. 회 의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27. 민원 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8. 지방공사 지도 감독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상 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 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기안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 정 의뢰	기안		○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9. 사무위임 및 위탁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 한 사항		기안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기안			○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조직담당관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조직담당관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 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30.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자치행정 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2. 시정 주요정책(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중 부시장 이 상 결재문서							젠더자문관
32. 의전행사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 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3. 그 밖의 업무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4. 의료보험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공개팀장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기능여부 확인	기안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공개팀장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안			○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					
38. 행정 정보공개 (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공개팀장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공개팀장		
40.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기안		○					
	3.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여부 의견 제출	기안		○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41.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 능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					
42. 공모전 운영	1.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경제정책 담당사무관	
	2.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근거 법령의 제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본문 내용 수정
- 나.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사무 협조처 현행화
- 다.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세부내용 명확화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7호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위원회 및 심의회”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별표 23의 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을 ““여성가족실, 복지실”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체부자유”를 “지체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사유란 중 “지체 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총괄관”을 “재난안전기획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무원차량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기동력을 요하는”을 “기동력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중 “매각을 요하는”을 “매각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처리를 요하는”을 “처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수리를 요하는”을 “수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질병이 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법률검토를 요하는”을 “법률검토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자문을 요하는”을 “법률자문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법률적합성 여부의 점검항목란 중 “승인(협의)를 요하는”을 “승인(협의)이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의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의 비고란 중 “민관협력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협의를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시 규칙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요하는”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8호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을 “서울특별시 순찰대원용 이륜차 운영규칙”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이륜자동차” 를 “순찰대원용 이륜차”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승차원 ” 을 “순찰대원 ” 으로, “승차원은” 을 “순찰대원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응총괄팀장” 을 “현장대응단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차원” 을 “순찰대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순찰 중 화재발생시 현장으로 이동

제5조제1항 중 “승차원” 을 “순찰대원” 으로, “분기별” 을 “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승차원” 을 각각 “순찰대원” 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차원” 을 “순찰대원” 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승차원” 을 “순찰대원” 으로, “기동복” 을 “기동복 또는 활동복” 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구급약품, 구조장비, 진압장비” 를 “구급약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전기1대” 를 “무전기 1대” 로 한다.

제11조제1호라목 중 “승차원이 실시한다” 를 “순찰대원이 실시할 것”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승차원” 을 “순찰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응관리과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이 분기 1회 이상, 소방서장이 연 2회” 를 “재난관리과장이 분기별 1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승차원” 을 “순찰대원” 으로, “대응관리과장 또는 현장지휘대장” 을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란 중 “갑(1)반” 을 “1팀” 으로, “을(2)반” 을 “2팀” 으로, “3반” 을 “3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조직개편 관련하여 현 근무체제에 맞추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이륜자동차를 순찰대원용 이륜차로 변경
- 나. 소방서의 경우 이륜차 운영관을 대응총괄팀장에서 현장대응단장으로 변경
- 다. 순찰 중 화재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변경
- 라. 출동 소방차량 유도 및 화재상황 전파 규정 삭제
- 마. 이륜차 국가유산 화재대응기동대 편성·운영 삭제 및 관련 교육 삭제
- 바. 이륜차의 분기별 근무계획을 연간 근무계획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대상 시설과”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과 대관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공공예식장 지정시설 및 대관료 감면범위(제2조 관련)

연번	시설명	위 치	대관료(8시간)	감면범위
1	문화비축기지(T2)	마포구 성산동	(실내) 486,400원 (야외) 400,000원	전액감면
2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다목적홀)	동작구 신대방동	102,090원	전액감면
3	북서울꿈의숲(창녕위궁제사)	강북구 번동	69,710원	전액감면
4	서울시립대(자작마루)	동대문구 전농동	480,000원	전액감면
5	서울어린이대공원(숲속의무대)	광진구 능동	250,000원	전액감면
6	서울여성플라자(국제회의장)	동작구 대방동	300,000원	전액감면
7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양화동	400,000원	전액감면
8	월드컵공원(자재운영시설)	마포구 상암동	39,710원	전액감면
9	한강공원(물빛무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전) 1,000,000원 (오후) 1,200,000원	전액감면
10	SETEC(컨벤션센터)	강남구 대치동	665,500원	전액감면
11	세종문화회관(에인마당)	종로구 세종로	434,000원 (4시간 기준)	전액감면
12	마곡광장(썬큰마당)	강서구 마곡동	110,176원 (4시간 기준)	전액감면
13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종로구 신문로2가	218,000원	전액감면
14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중구 태평로 1가	237,870원 (1시간 기준)	전액감면
15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초구 서초동	400,000원	전액감면
16	매현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64,350원	전액감면
17	솔밭근린공원	강북구 우이동	24,920원	전액감면
18	초안산하늘꽃정원	도봉구 창동	64,350원	전액감면
19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노원구 중계동	600,000원	전액감면
20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중계동	-	전액감면
21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강동구 암사동	-	전액감면
22	서울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용답동	-	전액감면
2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마루공원)	강남구 일원동	-	전액감면
24	서울물재생공원	강서구 마곡동	-	전액감면
25	서울한방진흥센터 (야외마당)	동대문구 제기동	-	전액감면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 중 대관료 감면 근거가 미비한 시설의 명단을 시행규칙의 별표에 추가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조례와 부합하도록 문구 정비(제2조)
- 나.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감면 근거 마련(별표)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10조제5호 본문 중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를 “국가·시·서울주택도시공사·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료 보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000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규모,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임대료 보조기준 조항의 각 호 금액에 대해 서울시 월세 가격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금액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반영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 를 ‘국가보훈부’ 로 개정(제11조제1항제2호)
- 나. 서울시 월세(보증금)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이 임대료 보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바우처를 임대료 보조기준에 포함함(제12조제2항)
- 다. 약칭 등 그 밖의 자구 정비(제3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1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장도”를 “공사지점이 계속 이동하는 공사 등”으로,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를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을 “설치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장도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4호”를 “제6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 및”을 “조례 제4조 및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도로점용공사장의 경우 현 시행규칙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이 의무임
- 공사지점이 계속 이동하는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 특성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공사는 자문회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제5조)
- 나. 그 밖의 인용조문 정비 등(제6조, 제7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2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협의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50호) 시행일(2024. 8. 5.) 이전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규정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5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50호) 시행일(2024. 8. 5.) 이전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을 적용(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를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로 한다.

제2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 “이라 한다)에게” 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로, “공사 사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을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 을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반환은 법인” 을 “반환은 법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공사사장을” 을 “공사를” 로, “공사사장은” 을 “공사는”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공사 사장은” 을 “공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요건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락동도매시장 등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가락동도매시장 등이 아닌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등을 법인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재허가 절차 등)” 을 “(갱신허가 절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에서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제출한다.

③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가, 그 밖의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법인이 법·조례·개설자가 정한 갱신허가 조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허가종료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공사 사장은” 을 “공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4항 중 “디스켓, CD” 를 “정보저장매체”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22조” 를 “제21조” 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밀수 또는” 을 “밀수 또는” 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시장사용료)” 를 “(도매시장 사용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을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 시장란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3조 관련)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물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 양곡, 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주 토요일

[별표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상한 수

(제5조, 제17조, 제25조 관련)

시 장 명	부 류 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가 락 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6개		1,187명
	수산물부류	3개		460명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60개	350명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양곡부류	1개	40개	140명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부류	1개		200명

[별표 4]

도매시장별 법인 및 시장도매인 자본금 최소 규모

(제7조, 제19조 관련)

시 장 명	부 류 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 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50억원		
	수산물부류	50억원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50억원	8억원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양곡부류	30억원	5억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부류	50억원		

[별표 6]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

(제14조 관련)

○ 청과부류

구 분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 3만톤 미만	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	20만톤 이상
인 원	2명	3명	5명	7명	9명	매 3만톤마다 1명 추가

○ 수산부류

구 분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인 원	2명	3명	4명	5명	매 10,000톤 마다 1명 추가

○ 양곡부류

구 분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 100,000톤 미만	100,000톤 이상
인 원	2명	3명	매 10,000톤마다 1명 추가

[별표 7]

부류별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

(제20조, 제27조 관련)

시장명	부류별		중도매인		시장 도매인
			개인	법인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5,000만원 (특수품목은 2,000만원)	1억원 (특수품목은 8,000만원)	2억원
	수산 부류	선어 패류	3,000만원 (4월~9월 2,500만원)	8,000만원 (4월~9월 6,500만원)	1억원
		건어	2,000만원 (4월~9월 1,600만원)	4,000만원 (4월~9월 3,200만원)	5천만원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2,500만원 (특수품목은 1,500만원)	6,500만원	2억원
서울특별시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수산 부류	선어 패류	2,500만원	6,500만원	—
		건어	1,600만원	3,200만원	—
서울특별시양재 동 양곡도매시장	양곡부류		24,000kg	80,000kg	96,000kg

[별표 8]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제38조 관련)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구분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매 장소
과 일 류	포도, 복숭아, 감귤, 자두, 딸기, 메론, 참외, 토마토, 박스수박	02:00	과실 경매장
	사과, 배, 유자, 단감, 딸은 감, 기타 수박, 수입과실(바나나, 오렌지)	08:30	과실 경매장
채 소 류	당근	제주산 08:00 기 타 15:30	채소 경매장
	상추, 썩갯, 시금치, 아욱, 근대, 열무, 청경채, 치커리, 얼갈이 중 박스 포장품, 대파	19:00	채소 경매장
	시금치, 아욱, 근대, 열무, 얼갈이, 옥수수, 봄동 중 비규격 출하품 (일명 짝집)	20:00	채소 경매장
	감자, 깻잎	21:30	채소 경매장
	버섯류, 부추, 미나리, 양배추, 고추	22:00	채소 경매장
	무, 배추, 포장쪽파	22:00	청과배송주차장
	피망, 가지, 호박, 오이, 양파, 시금치, 봄동(남부지방 비규격 출하품)	23:00	채소 경매장
수산 부류	대중 선어, 건명태	23:30	수산 경매장
	조 개 류 등	01:00	
	냉동류	01:30	
	활 어 류	03:30	
	건오징어, 건멸치	06:00	
	해태(김), 건미역	06:30	
	건포류	07:00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구 분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매 장소
과 일 류	포도, 복숭아, 감귤, 자두, 딸기, 메론, 참외, 토마토, 박스수박	02:00	청과경매장
	사과, 배, 유자, 단감, 뽕은감, 기타 수박, 수입과실(바나나, 오렌지)	08:30	청과경매장
채 소 류	당근	제주산 08:00 기 타 15:30	청과경매장
	상추, 쑥갓, 시금치, 아욱, 근대, 열무, 청경채, 치커리, 얼갈이 중 박스 포장품, 대파	19:00	청과경매장
	시금치, 아욱, 근대, 열무, 얼갈이, 옥수수, 봄동 중 비규격 출하품 (일명 짝집)	20:00	청과경매장
	감자, 깻잎	21:30	청과경매장
	버섯류, 부추, 미나리, 양배추, 고추	22:00	청과경매장
	무, 배추, 포장쪽파	22:00	트럭단위판매장
	피망, 가지, 호박, 오이, 양파, 시금치, 봄동(남부지방 비규격 출하품)	23:00	청과경매장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구 분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매 장소
수산부류	대중선어	01 : 00	수산 경매장
	냉 동 류	03 : 00	
	활 어 류	03 : 00	
	조개류 등	01 : 00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구 분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매 장소
양곡부류	일반 양곡	07:00, 09:00, 14:00	도매시장법인매장
	수입 양곡	10:00	공동 경매장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처리기한 60일 ※ 단, 갱신허가 처리기한 3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기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명 (법 인 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		
	참가 도매 시 장 명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 명	
	거래 품목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법인인 경우 임원) 나. 사진 1매(반명합판 3cm×4cm) 다. 기존 중도매인허가증(허가갱신 및 법인 전환시) 2. 개인의 경우 가. 은행의 잔고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허가 갱신 및 법인 전환의 경우 대차대조표) 라. 신규 법인 전환시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중도매업 폐업신고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도매시장 최저거래 기준 조정 등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제4조, 제16조, 제24조 등에 표기된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0조, 제42조제1항)
-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 절차 규정 정비(제24조)
- 중도매업 재허가 절차 규정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 반영(“재허가” → “갱신허가”) 등(제26조제1항)
-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증 권한 위임 및 검증결과 제출 기한 규정 신설(제26조제3항)
- 중도매업 허가 신청 처리 기한 변경(별지 제8호 서식)
- 서울시 도매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축산부류 관련 조항 삭제(제43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나. 도매시장 최저거래 기준 정비

-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삭제 및 시장별 구분 기준 정비(별표 7 개정)
-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기준 조정 및 수산부류 비수기(4~9월) 반영(별표 7 개정)
- ※ 별표 7의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란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다. 기타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시장도매인 재지정 관련 규정 신설(제16조제7항)
- 판매원표 보관방법 정비(제48조제4항)
-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제52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별표 3)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4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 라. 자료상형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긴급세무조사”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시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세목별조사”란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부분조사”란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세무조사의 관할

제6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상호 간에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 인력의 지원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심의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을 하는 경우 세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사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3.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 확인받은 기업
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5.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중 중소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유예를 취소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되기 전에 취득물건별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써 그 유예기간 중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세 체납액(「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식)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 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제16조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 진행

제18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책임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등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장소)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

제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시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 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28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해 조사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수칙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확인·선정·인증받은 경우부터 한 차례만 적용한다. 다만 확인·선정·인증받기 전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부터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서울특별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소속</td> <td style="width: 16.5%; text-align: center;">직급</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width: 16.5%; 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td> </tr> </table>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	
	주소(사업장)			

연 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시 또는 구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서울특별시 시세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 관련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진행절차 순으로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함(제2조)
- 나. 시·자치구간 협업 근거를 마련함(제2조, 제5조, 제6조)
 - 합동조사 정의 및 시·자치구간 조사사무 지원 근거 신설
- 다.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대상건수와 상관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함(제9조)
- 라.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하고 유예기준을 구체화함(제10조)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설
 - 유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범위에서 유예 가능
- 마. 법령 체계상 직접조사를 우선적으로 전제함(제13조)
 - 서면조사는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 바. 청렴서약서 작성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전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5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당” 을 “하며, 주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고자” 를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관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자문하고자”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건축가의 모집 방법) 조례 제37조에 따른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의 제목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행정 지원)” 을 “(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 를 각각 “공공건축가” 로,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를 각각 “공공건축가” 로 한다.

제8조 중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 을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건축·공간환경 분야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단일화하고 업무범위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건축가’ 용어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를 할 때에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체납자 권익에 관계된 정수처분 예고 통지방식을 신설하고,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수처분 예고 시 통지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유의하도록 함(제56조제7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의 자전거대여소의 기준 및 이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3,300원
	• 2인승	6,600원
	• 다인승(3~4인)	20,000원
	• 전기동력	9,000원
	• 기타(유아동승, MTB 등)	5,000원
	추가요금(10분당)	
	• 1인승	500원
	• 2인승	1,000원
	• 다인승(3~4인)	3,300원
	• 전기동력	1,500원
	• 기타(유아동승, MTB 등)	1,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대여소 이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승(3,000원→3,300원), 2인승(6,000원→6,600원) 자전거 이용료 인상
- 나.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 신설
- 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추가요금 산정 기준을 현재 15분 → 10분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의”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감사위원장이 된다”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규칙의”를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자에게”를 “각 호에 따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으로”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으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행동강령(총)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신”을 “신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으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서식으로”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품등을”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금품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폐기처분하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금품등 반환확인서

반환 받는 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에 대하여 반환을 확인합니다.

반환 연월일 : 20

인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 수수 금지 금품 자진신고 시 반환서식, 폐기절차 등 처리 기준을 보완함

2. 주요내용

- 가.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적용대상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 제외 (제27조제9항)
- 나. 수수 금지 금품 자진신고 시 폐기절차, 반환서식 등 처리 기준 보완(제34조제6항제1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68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66	429	1,134	5,174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16	420	355	4,984	225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녹지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4	1,958	177	106	1,394	99
-------	-------	-------	-----	-----	-------	----

행정또는공업	10	5			5	
--------	----	---	--	--	---	--

행정·공업 또는시설	83	73		1	8	1
---------------	----	----	--	---	---	---

녹지또는시설	3				3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의료기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보건또는의료기술란, 사육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9	1,310	122	131	1,669	57
-------	-------	-------	-----	-----	-------	----

의료기술	43	2		1	40	
------	----	---	--	---	----	--

행정·공업 또는시설	42	38		2	2	
보건또는의료기술	2	1			1	
사육운영	1				1	

같은 표 9급 소계란, 농업또는녹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89	3	3	2	481	
농업또는녹지	3				3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아래 임상심리사란, 동물사육란, 다군 소계란, 다군 소계란 아래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61	28	4	2	127	
임상심리사	1				1	
동물사육	17				17	
다군 소계	91				91	
동물사육	45				45	

별표 3의 경찰공무원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경정란 다음에 경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찰공무원 계	7			4		3
경감	4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정원을 19,167명에서 19,171명으로 4명 증원하고,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 증원(+4명)
 - 경감 +4명
- 나. 동물사육 및 심리치료 관련 인력 등 정원 상계 조정 및 기관 간 정원 이관
 -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6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 2,115명” 을 “총 2,083명”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총 계	2,083	319	492	81	440	234	143	8	16	11	28	431	210	110
본 청	270	105	15	0	64	26	27	0	6	0	5	81	5	0
민방위담당관	3				2	1	1					1		
소방행정과	18				6	3	3					7	5	0
일자리정책과	21	21												
복지정책과	3	3												
어르신복지과	1	1												
돌봄복지과	0	0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유산활용과	11	2	9											
건강관리과	1	1												
감염병관리과	3	3												
데이터전략과	4	4												
정보시스템과	8	8												
총무과	174	55			54	22	23		4		5	65		
주택정책과	2	2												
한옥건축자산과	1	1												
광화문광장사업과	10				2				2			8		
동물보호과	8	2	6											
직속기관	311	60	2	0	119	94	19	0	2	2	2	106	24	0
서울시립대학교	111	20			20	10	8		2		0	51	20	
보건환경연구원	24	8			10	4	4			2		6		
인재개발원	6											6		
농업기술센터	9	7			2						2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서울종합방재센터	2											2		
소방서	126	25			75	75						26		
소방학교	21		2		6	3	3					9	4	
시민안전체험관	12				6	2	4					6		
사업소	1,493	154	475	81	257	114	97	8	8	9	21	235	181	110
서울아리수본부	127	9	5		54	21	21				12	44	11	4
미래한강본부	142		76		6	1	1		1	1	2	52	2	6
데이터센터	8				3	3						4	1	
시립어린이병원	39	7			9	4	5					10	2	11
시립서북병원	60	7			12	5	6		1			8	9	24
시립은평병원	25	2			8	4	4					9	4	2
서울역사박물관	115	37			28	14	14					19	31	
한성백제박물관	77	41			14	4	4		1	1	4	8	14	
서울시립미술관	45	3			13	8	5					16	9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6		38											18
서울도서관	3	3												
서울역사편찬원	5	4										1		
품질시험소	2											1	1	
동부도로사업소	25		1	14	8	4	4					0	2	
서부도로사업소	17		1	14								0	1	1
남부도로사업소	19		1	13								1	3	1
북부도로사업소	20		1	14								2	1	2
성동도로사업소	16		1	13								2	0	
강서도로사업소	17		1	13								2		1
중량물재생센터	11		3		3	2		1				2	3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서울대공원	180	6	55		64	29	17	6	5	6	1	20	9	26
동부공원여가센터	66	2	52									5	5	2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중부공원여가센터	106	1	83		3	1	2						19	
서부공원여가센터	132		90		4	1	1				2	4	28	6
북부공원여가센터	44		26		2	1	1						16	
서울시립과학관	43	26			6	3	3					6	4	1
서울식물원	65	4	37		11	5	5			1		7	6	
서울기록원	2	2												
아동복지센터	4				2	1	1					2	0	
차량정비센터	0											0		
공무원수련원	15				6	3	3					9		
의회사무처	9	0	0	0	0	0	0	0	0	0	0	9	0	0
의회사무처	9											9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15명에서 2,083명으로 32명 감원 조정(제4조 및 별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93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관련 위반대상자에게 (자택, 회사)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주소불명 또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장방문하여 폐문부재로 자택 문틈사이 끼여두고 회사는 방문하였으나 공실로 확인되어 전화는 받질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20.(월)~2025.2.2.(일) 14일간
3. 통지사항
 - 1) 사전통지서 대상: 함O북(590817-1*****) 【명*소방】
 - 2)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7*길** , ***호(성내동, 한솔***아파트)
 - 3)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위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소방기술자변경) 미신고)
 - 4) 부과금액: 금60,000원(금육십만원)
 - 5) 등기번호: 1078833669297, 1078833719211, 1154501181266, 11545011807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6) 송달불능사유: 자택은 폐문부재, 회사는 수취인 불명
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의견제출서 및 사전납부로 인한 납부금액 20% 감경의 사항을 위해 여러 차례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및 휴대폰 문자전송도 하였으나 명확한 전달의 의사 표현도 하지 않고 전화연결되 되지 않아 공시송달하며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69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